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에 범죄수익 추적, 산업기술 유출 대응 등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경정 4명, 경감 5명, 경위 5명, 경사 2명, 경장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원 9명(7급 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6급 9명)하면서 관리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다군 4명)으로 전환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역량 강화 및 경찰헬기·모의비행장비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7명(경정 1명, 경감 3명, 경위 6명, 경사 4명, 경장 2명, 연구관 1명)을 증원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민생치안 대응을 위하여 정원 273명(경감 172명, 경위 101명)의 직급을 각각 상향 조정(경정 172명, 경감 101명)하면서 정원 26명(순경 26명)을 감축하며, 경찰청 소속기관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명(다군 1명)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소속기관의 학교폭력 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105명(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호, 0000. 00. 00. 공포, 0000. 00. 00.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 관리운영직군 정원 23명(9급 23명)과 경찰청 소속기관 관리운영직군 정원 39명(9급 39명)을 각각 행정 및 과학기술직군 정원으로 전환하고, 경찰청 본부의 공업·시설직렬 1명(6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전환하며, 경찰

청 소속기관의 식품위생·위생 또는 조리 직렬 3명(9급 3명)을 행정직렬 정원으로 전환하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법률 제19409호, 2023. 5. 16. 공포, 2024. 5. 17. 시행)으로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0000.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1호라목 중 “건설·환경·의료·보건위생·문화재”를 “건설·환경·의료·보건위생·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3조제5호 중 “공무원·병무·문화재·식품·환경·충기·성매매”를 “공무원·병무·국가유산·식품·환경·충기·성매매”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874”를 “1,891”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05”를 “1,222”로 하며, 경 정 “154”를 “158”로 하고, 경 감 “386”을 “391”로 하며, 경 위 “371”을 “376”으로 하고, 경 사 “175”를 “177”로 하며, 경 장 “30”을 “31”로 하고, 행정주사 “11”을 “21”로 하며,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4”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136”을 “127”로 하며, 행정서기보 “25”를 “44”로 한다.

별표 5 중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3”을 “4”로 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을 “15”로 하며,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 다음에 “행정서기보·전산서기보·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를 신설하고, 전화상담운영서기보 “49”를 “39”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85”를 “68”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 “15”를 “19”로 한다.

별표 6 중 총계 “1,982”를 “1,999”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05”를 “1,222”로 하며, 경정 “154”를 “158”로 하고, 경감 “386”을 “391”로 하며, 경위 “371”을 “376”으로 하고, 경사 “175”를 “177”로 하며, 경장 “30”을 “31”로 하고, 행정주사 “23”을 “33”으로 하며,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4”를 “3”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155”를 “146”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48”을 “67”로 한다.

별표 6 중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3”을 “4”로 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3”을 “15”로 하며,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5 다음에 “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1”를 신설하고, 전화상담운영서기보 “49”를 “39”로 하며, 사무운영서기보 “85”를 “68”로 하고, 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 “15”를 “19”로 한다.

별표 7 중 총계 “134,326”을 “134,3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42”를 “129,932”로 하며, 경정 “2,874”를 “3,047”로 하고, 경감 “10,529”를 “10,461”로 하며, 경위 “17,060”을 “16,965”로 하고, 경사 “28,571”을 “28,575”로 하며, 경장 “31,367”을 “31,369”로 하고, 순경 “38,812”를 “38,7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4,362”를 “4,363”으로 하고, 행정서기보 “550”을 “581”로 하며, 식품위생서기보 ·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44”를 “41”로 하고,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48”을 “58”로 한다.

별표 7 중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9”를 “170”으로 하고, 공업연구관 “2”를 “3”으로 하며, 통신운영서기보 “3”을 “2”로 하고, 기계운

영서기보 “9”를 “5”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24”를 “21”로 하고, 사무
운영서기보 “326”을 “294”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경찰대학 예비군 담
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8 중 총계 “135,137”을 “135,128”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29,94
2”를 “129,932”로 하며, 경정 “2,874”를 “3,047”로 하고, 경감 “10,529”를
“10,461”로 하며, 경위 “17,060”을 “16,965”로 하고, 경사 “28,571”을 “28,5
75”로 하며, 경장 “31,367”을 “31,369”로 하고, 순경 “38,812”를 “38,786”으
로 하며, 일반직 계 “5,173”을 “5,174”로 하고, 행정서기보 “589”를 “620”
으로 하며, 식품위생서기보·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44”를 “41”로
하고,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48”을 “58”로 한다.

별표 8 중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69”를 “170”으로 하고, 공
업연구관 “2”를 “3”으로 하며, 통신운영서기보 “3”을 “2”로 하고, 기계운
영서기보 “9”를 “5”로 하며, 열관리운영서기보 “24”를 “21”로 하고, 사무
운영서기보 “326”을 “294”로 하며, 전문경력관 다군(경찰대학 예비군 담
당) 1 다음에 “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 1”를 신설한다.

별표 10 제2호나목에 2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 학교폭력 대응 업무(시·도경찰 청)	105명 (경감 12명, 경위 26명, 경사 67명)	2026년 12월 31일까지
----------------------------	-------------------------------------	-----------------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수사국) ① ~ ⑤ (생략)	제16조(수사국)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반부패 · 공공범죄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⑥ ----- -----.
1.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한 수사 지휘 · 감독	1.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u>건설 · 환경 · 의료 · 보건 위생 · 문화재</u> 및 그 밖의 공공범죄 사건	라. <u>건설 · 환경 · 의료 · 보건 위생 · 국가유산</u>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⑦ ~ ⑪ (생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 · 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 및 제17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대전광역시 · 경기도북부 · 충청남도 · 전북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시 · 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6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제63조(수사과) ----- -----. ----- ----- ----- ----- ----- ----- ----- ----- ----- -----.

1. ~ 4. (생 략) 5. <u>공무원 · 병무 · 문화재 · 식품</u> <u>· 환경 · 총기 · 성매매</u>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정보의 처리 및 수사 · 지도 6. ~ 16.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u>공무원 · 병무 · 국가유산 · 식</u> <u>품 · 환경 · 총기 · 성매매</u> --- ----- ----- 6. ~ 16.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	·	·	
총 계	<u>1,874</u>	<u>1,891</u>	+17
경찰공무원 계	<u>1,205</u>	<u>1,222</u>	+17
·	·	·	
·	·	·	
경 정	<u>154</u>	<u>158</u>	+4
경 감	<u>386</u>	<u>391</u>	+5
경 위	<u>371</u>	<u>376</u>	+5
경 사	<u>175</u>	<u>177</u>	+2
경 장	<u>30</u>	<u>31</u>	+1
·	·	·	
·	·	·	
행정주사	<u>11</u>	<u>21</u>	+10
·	·	·	
·	·	·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4</u>	<u>3</u>	-1
·	·	·	
·	·	·	

행정주사보	<u>136</u>	<u>127</u>	-9
•	•	•	
•	•	•	
행정서기보	<u>25</u>	<u>44</u>	+19
•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3</u>	<u>4</u>	+1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3</u>	<u>15</u>	+2
<u>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49</u>	<u>39</u>	-10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5</u>	<u>68</u>	-17
•	•	•	
•	•	•	
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	<u>15</u>	<u>19</u>	+4

	.	.	.	
	.	.	.	

[별표 6]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982	1,999	+17
경찰공무원 계	1,205	1,222	+17
경 정	154	158	+4
경 감	386	391	+5
경 위	371	376	+5
경 사	175	177	+2
경 장	30	31	+1
행정주사	23	33	+10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4	3	-1
행정주사보	155	146	-9

•	•	•	
•	•	•	
행정서기보	<u>48</u>	<u>67</u>	+19
•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3</u>	<u>4</u>	+1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3</u>	<u>15</u>	+2
<u>행정서기보 · 전산서기보 · 공업 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u>	<u><신 설></u>	<u>1</u>	+1
•	•	•	
•	•	•	
전화상담운영서기보	<u>49</u>	<u>39</u>	-10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85</u>	<u>68</u>	-17
•	•	•	
•	•	•	
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	<u>15</u>	<u>19</u>	+4
•	•	•	



[별표 7]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4,326</u>	<u>134,317</u>	-9
경찰공무원 계	<u>129,942</u>	<u>129,932</u>	-10
•	•	•	
•	•	•	
경 정	<u>2,874</u>	<u>3,047</u>	+173
경 감	<u>10,529</u>	<u>10,461</u>	-68
경 위	<u>17,060</u>	<u>16,965</u>	-95
경 사	<u>28,571</u>	<u>28,575</u>	+4
경 장	<u>31,367</u>	<u>31,369</u>	+2
순 경	<u>38,812</u>	<u>38,786</u>	-26
•	•	•	
•	•	•	
일반직 계	<u>4,362</u>	<u>4,363</u>	+1
•	•	•	
•	•	•	
행정서기보	<u>550</u>	<u>581</u>	+31
•	•	•	
•	•	•	

식품위생서기보 ·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u>44</u>	<u>41</u>	-3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48</u>	<u>58</u>	+10
.	.	.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69</u>	<u>170</u>	+1
.	.	.	
.	.	.	
공업연구관	<u>2</u>	<u>3</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3</u>	<u>2</u>	-1
기계운영서기보	<u>9</u>	<u>5</u>	-4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24</u>	<u>21</u>	-3
.	.	.	
사무운영서기보	<u>326</u>	<u>294</u>	-32
.	.	.	
.	.	.	

<u>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u>	<u><신 설></u>	<u>1</u>	+1
------------------------------	--------------------	----------	----

[별표 8]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35,137	135,128	-9
경찰공무원 계	129,942	129,932	-10
경 정	2,874	3,047	+173
경 감	10,529	10,461	-68
경 위	17,060	16,965	-95
경 사	28,571	28,575	+4
경 장	31,367	31,369	+2
순 경	38,812	38,786	-26
일반직 계	5,173	5,174	+1
행정서기보	589	620	+31

식품위생서기보 · 위생서기보 또는 조리서기보	<u>44</u>	<u>41</u>	-3
·	·	·	
공업서기보 또는 시설서기보	<u>48</u>	<u>58</u>	+10
·	·	·	
·	·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69</u>	<u>170</u>	+1
·	·	·	
·	·	·	
공업연구원	<u>2</u>	<u>3</u>	+1
·	·	·	
·	·	·	
통신운영서기보	<u>3</u>	<u>2</u>	-1
기계운영서기보	<u>9</u>	<u>5</u>	-4
·	·	·	
열관리운영서기보	<u>24</u>	<u>21</u>	-3
·	·	·	
사무운영서기보	<u>326</u>	<u>294</u>	-32
·	·	·	
·	·	·	

<u>전문경력관 다군(지문감정 담당)</u>	<u><신 설></u>	<u>1</u>	+1
------------------------------	--------------------	----------	----